

호반써밋 브룩사이드에 당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(검증)을 위해 당첨자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서류제출 기간 : 2021. 03. 18(목) ~ 2021.03. 28(일)까지 견본주택 방문하여 접수
- 서류제출 장소 :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견본주택 (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332번지)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 02. 26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시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는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서류제출 기한 내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, 정당계약기간에는 관람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초본을 "전체포함"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☐ 당첨자 서류제출 구비서류

구분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필수	신분증	본인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필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 •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 ※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※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분에 한하며, 대리발급분 불가
	필수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 • 본인 및 세대원의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 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필수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 • 주민등록 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필수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필수	출입국 사실 증명원 (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)	본인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2.26)로 지정하여 "상세"로 발급 • 발급기관 :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해외근무자(단심부임)증빙서류: 해외근무 증빙서류
	필수	서약서	본인 • 견본주택비치
필요시 추가 서류	해당자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1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
	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 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해당자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체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해당자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/ 직계비속 •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해당자	출입국 사실 증명원 (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)	배우자 및 세대원 •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의 경우 •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2.26)로 지정하여 "상세"로 발급
	해당자	해외근무 증빙서류	본인 • 국내기업 및 기술훈수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예: 번대시 제출):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는 생업사정 불인정
	해당자	복무확인서	본인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에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
제3자 대리 제출시	필수	인감증명서	청약자 •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0파트 공급 계약 위임용) ※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에 한하며, 대리발급분 불가
	필수	인감도장	청약자 • 인감증명서상 일치하는 인감도장 필수
	필수	신분증 및 도장	대리인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필수	위임장	대리인 • 견본주택 비치[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]
부적격 소명 서류	해당자	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주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(기옥대장 등본 포함)
	해당자	무허가건축물확인서	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
	해당자	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
	해당자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 미분양주택 분양권 최초권리 증명서

#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[특별공급]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기관추천	공통서류 준비		
다자녀 특별공급	해당자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주민등록표상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) 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전체포함으로 발급
	해당자	한부모가족증명서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해당자	가족관계증명서	• 재혼가정의 자녀(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)가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*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해당자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본인
	해당자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자녀
	해당자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• 본인 또는 배우자
	해당자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• 본인
	해당자	입양관계증명서	• 본인 또는 배우자
신혼 부부 특별공급	필수	혼인관계증명서	• 혼인신고일 확인(*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“상세”로 발급)
	필수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상세)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*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※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T. 1577-1000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분
	필수	소득증빙서류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*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2.26)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) *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
	해당자	가족관계증명서	• 재혼가정의 자녀(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)가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*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해당자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• 본인 또는 배우자
	해당자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• 본인
	해당자	입양관계증명서	• 본인 또는 배우자
	해당자	비사업자확인각서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* 견본주택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필수	주민등록표초본	•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2.26)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(공고일로부터 과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*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필수	가족관계증명서	•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해당자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• 본인
	해당자	가족관계증명서	• 배우자
생애 최초 특별공급	필수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상세)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*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※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T. 1577-1000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분
	필수	소득증빙서류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* 입주자모집공고일(21.02.26)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) *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
	필수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• 본인
	필수	혼인관계증명서	• 본인
	해당자	가족관계증명서	• 배우자
	해당자	주민등록표초본	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해당자	주민등록표초본	• 배우자
	해당자	비사업자확인각서	•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* 견본주택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